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335
결재일자	2016.1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민원조사팀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	
김미옥	윤희숙	이경환	01/11 김병환		
협 조	구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과장 인사담당 의정담당		이준기 홍동석 서경택 안귀성		

## 2016년 공직윤리제도 운영계획



**감사담당관**  
**민원조사팀**

# 2016년 공직윤리제도 운영계획

201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,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I 2016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추진

### 1

#### 추진개요

- **신고대상자** : 2015.12.31. 현재 재산등록부서 현 등록의무자 총 312명
  - 공개대상자 : 24명(구청장 1, 구의원 22,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)
  - 비공개대상자 : 288명

※ 관련 근거 :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
- **신고기준일** : 2015. 12. 31
- **신고기간** : 2016. 1. 1 ~ 2. 28 (2개월)
- **신고방법** :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peti.go.kr>)에서 신고
- **신고사항** :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,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·비속의 재산
- **201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대상자 현황**
  - 2015. 12. 31. 기준 등록의무자 312명 중
    - 퇴직자 5명(2015.12.31.기준), 의무면제자 12명(2016.1.1.기준) 을 제외한 **295명**

구 분	계	구 청 소 속 등 록 의 무 자																구 의 회	공직유관단체		
		소 계	구청장	3급	4급	감사담당관	주택관리과	도시계획과	주거정비과	건축과	환경과	도로시설과	안전치수과	공원녹지과	세무1과	세무2과	보건위생과			회계관련직원등	특별사법경찰관
계	295	295	1	1	9	21	12	13	13	19	14	27	22	14	30	29	14	30	2	22	2
공개자	24	24	1																	22	1
비공개자	271	271		1	9	21	12	13	13	19	14	27	22	14	30	29	14	30	2		1

## ■ 등록의무자, 등록부서 및 등록대상 재산

### ● 등록의무자

- 구청장, 부구청장, 성북구의회 의원, 4급 이상 공무원
- 5~7급 특정업무 및 회계관련 공무원
-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사, 성북문화재단 이사

### ● 등록부서(15개 부서)

- 지정주체 : 등록기관의 장(구청장)
- 등록부서 : 감사, 조세, 건축, 토목, 환경, 식품위생 인허가, 회계 관련 부서
  - 감사담당관, 주택관리과, 도시계획과, 주거정비과, 건축과, 환경과, 도로시설과, 안전치수과, 공원녹지과, 세무1과, 세무2과, 보건위생과, 재무과·보건소·구의회 회계 관련 담당

### ● 등록대상 재산 : 본인,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

-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
  - ※ 직계존비속 : 부모, 자녀, 조부모, 손자녀 등
  - ⇒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

## 《 등록대상 재산의 종류 》

- 부동산 소유권(토지, 건물) · 지상권 · 전세권
- 광업권, 어업권, 자동차, 건설기계, 선박, 항공기 등
-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·예금, 채권·채무
-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(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 등)
- 주식매수선택권
-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
-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, 골동품, 예술품
-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
- 합명 · 합자 유한회사의 출자지분
-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

### ■ 심사관할별 등록의무자

-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: 구청장, 부구청장
-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: 4급 이상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
-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: 구 소속 5~7급 직원 및 도시관리공단 · 문화재단 임직원

## 2

### 세부추진계획

#### 1

### 정기재산변동신고

### ■ 등록의무자 정기재산변동 신고(2016.1.1 ~ 2.29)

- 대 상 : 등록의무자
- 예 외
  - 12월 중에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
  - 등록의무자가 1~2월 중에 퇴직 ·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
  - 신고유예를 허가받은 경우
- 기 준 일 : 2015.12.31.(2015.1.1.~12.31.까지의 재산변동사항)

● 기 간 : 2016.1.1. ~ 2.29

● 신고방법

-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peti.go.kr>)을 통한 온라인 신고
-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안내서, 공직윤리시스템 콜센터,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하여 신고관련 지원을 받되 최종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신고

■ 등록의무자 본인 금융정보 최신자료 검증 (2016.1.15 ~ 1.20)

-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누락 및 오류정보 내용을 검증

■ 금융·부동산 정보 활용 입력(2016.1.21~ 2.29)

- 정보제공동의자의 “금융정보 활용입력”을 통한 신고

■ 정기재산변동신고 조기신고 독려(2016.1.21.~2.29)

-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 신고하는 관행 지양
- 2016.2.17.까지 90%이상 신고완료를 목표로 일일점검 및 안내 실시
- 재산등록 신고서 제출마감 : 2015. 2. 29 (24:00 까지)

■ 정기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(공직자윤리법 제10조)

- 공개시기 : 2016. 3. 29(화)
- 공개대상 : 구청장, 성북구의회 의원 22명,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
- 공개방법 : 구청장(관보), 구의원(시보), 공단이사장(구보)
- 공개목록 작성
  -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(성명, 연락처, 계좌번호 등)은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, 기재 시 등록의무자를 통하여 수정 후 제출하도록 함
  - 재산공개목록 서식의 “변동사유”를 반드시 기재
    - 재산증가 : 자금의 출처 등 취득경위
    - 재산감소 : 자금의 사용처를 기재

## 2

## 수시재산변동신고

### ■ 최초 재산등록

- 대 상 : 신규채용 · 승진 등으로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
- 기 준 일 : 등록의무자가 된 날
- 기 간 :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

### ■ 변동신고

#### ●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

- 대 상 :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
- 기 준 일 :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날(총2회 신고)
- 기 간 : 전보 또는 전직된 날부터 1개월 이내

#### ● 재등록자 재산변동신고

- 대 상 : 의무면제 · 퇴직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
- 기 준 일 : 재등록의무자가 된 날
- 기 간 :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

#### ● 퇴직자 재산변동신고

- 대 상 :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
- 기 준 일 : 퇴직한 날
- 기 간 :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

※ 수시 변동발생시 재산등록 변동신고서 생성(PETI) 및 개별안내 공문발송

## 3

## 고지거부

### ■ 고지거부 허가신청 · 재심사 신청 및 심사

#### ●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심사

- 신청대상 :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

- 신청기간
  - 30일 이내(2016.1.1.~1.30) 신청
  - 기한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을 등록의무자에게 안내
    - ※ 퇴직 · 의무면제 신고 시에는 고지거부 신청불가
- 신청방법 : PETI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
- 심 사
  - 허가권자 :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
  -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
  -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결정 · 통보  
(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
- 고지거부 유효기간 :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
- 제출서류 : 고지거부 신청서, 독립생계 관련 증명자료 등

●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및 심사

- 신청대상 :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자
  - ※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3년마다 고지거부 재심사를 받아야 함

<< 2016년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 >>

- 2013년도 최초(재등록)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 받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
- 13.12.31 기준일 정기변동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

- 신청기간 : 고지거부 허가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 
(2016.1.1. ~ 2.29)
- 신청방법 : PETI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
- 심 사
  - 허가권자 :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
  -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
  - 2016.11.30.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 결정 통보
- 고지거부 유효기간 : 다음해 정기변동신고 시부터 3년간
- 제출서류 : 고지거부 신청서, 독립생계 관련 증명자료 등

### ■ 구의회사무국, 해당부서(15개 부서) 등

- 해당 부서장은 정해진 기간 내 의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독려
- 고지거부를 희망하는 등록의무자는 반드시 2016.1.31까지 고지거부 허가 신청을 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
- 특히 구의원에 대한 재산변동신고 접수 시 변동재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사항 접수 검토에 정확을 기하고, 공개목록 작성시 본인 신고내용 그대로 공개되니 재산변동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식 거래자는 주식 거래내역서를 빠짐없이 첨부토록 안내바람

### ■ 행정지원과

- 승진,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협조
- 201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발간 협조



## 1

## 위원회 현황

## 설치 근거

- 공직자윤리법 제9조(공직자윤리위원회)
-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## 위원회 구성

- 위원현황

직 위	성 명	성 별	직 업	위촉일	구 성
위원장	전 성	남	변호사 (법률사무소 창신)	2014.08.26	위촉직
부위원장	권영애	여	성북구의원	2014.07.01	당연직
위원	문경주	남	한국무역대표 (前 성북구의원)	2012.08.26 (연임)	위촉직
위원	나광수	남	前 성북구의원	2014.08.26	위촉직
위원	손정수	남	행정국장	2014.01.01	당연직

- 임 기 : 2년 / 1차 연임가능

※ 구 소속 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

## 위원회 기능

- 재산형성과정 소명
-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-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-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·행위제한에 관한 승인 등

## 2

## 2015년 추진실적

## ■ 제1차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

구 분	내 용	비 고
회의일시	○ 2015. 6. 23(화) / 15:00	
참석자	○ 총7명 참석 - 전 성(위원장), 권영애(부위원장), 나광수(위원), 문경주(위원), 손정수(위원), 반성태(간사), 김진행(담당자)	
회의안건	○ 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결과 조치의결의 건	
회의결과 요약	○ 등록의무자 심사완료 종결처리 : 301명 ○ 재산등록 축소·누락 심사대상자 : 27명 (보완명령 14명,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)	

## ■ 제2차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

구 분	내 용	비 고
회의일시	○ 2015. 12. 15(화) / 15:00	
참석자	○ 총7명 참석 - 전 성(위원장), 권영애(부위원장), 나광수(위원), 문경주(위원), 손정수(위원), 윤희숙(간사), 김미옥(담당자)	
회의안건	○ 2015년도 수시변동신고 재산등록 심사결과 조치의결의 건 ○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(안) 의결의 건	
회의결과 요약	○ 등록의무자 심사완료 종결처리 : 42명 ○ 재산등록 축소·누락 심사대상자 : 34명 (보완명령 19명, 경고 및 시정조치 15명)	

## 3

## 2016년 운영계획

회 차	일 시	주 요 안 건	장 소	비 고
제1회	2016. 6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</li> <li>○ 고지거부 심사결과 확정</li> </ul>	성북구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실 (구청8층)	
제2회	2016. 12월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6년 수시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</li> <li>○ 2017년 정기변동 신고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 자료의뢰 의결</li> </ul>		

## Ⅲ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

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,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

### 1 개 요

- **제한대상** :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- **제한기관** :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, 시장형공기업, 안전감독 등 공직유관단체, 사립대학, 종합병원,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
- **제한기간** : 퇴직일부터 3년간 (2015.3.30. 이전 퇴직자는 2년간)
- **제한기준** :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
- **취업절차** : 취업을 하려는 자는 취업 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거나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
- **심 사** :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및 승인

### 2 관련근거

- 공직자윤리법 제17조~제19조의 4

### 3

## 세부추진계획

### ■ 취업제한대상자

- 원 칙 :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
  - 4급 이상 공무원
  - 인·허가, 감사, 조세, 계약, 건축, 토목, 환경, 식품위생 등 5~7급 공무원
  - 공직유관단체 임직원(상근 이사·감사 이상)
- 적용제외 : 변호사·회계사·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
  - ※ 변호사→법무법인 등, 회계사→ 회계법인, 세무사→ 세무법인

### ■ 취업제한기관

- 영리사기업체 :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
- 법무법인·회계법인·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: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
- 세무법인 :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
- 협 회 : 영리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
- 기 타 : 시장형공기업, 공직유관단체, 사립대학, 종합병원, 사회복지법인 등
  - ※ 2015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등 : 13,586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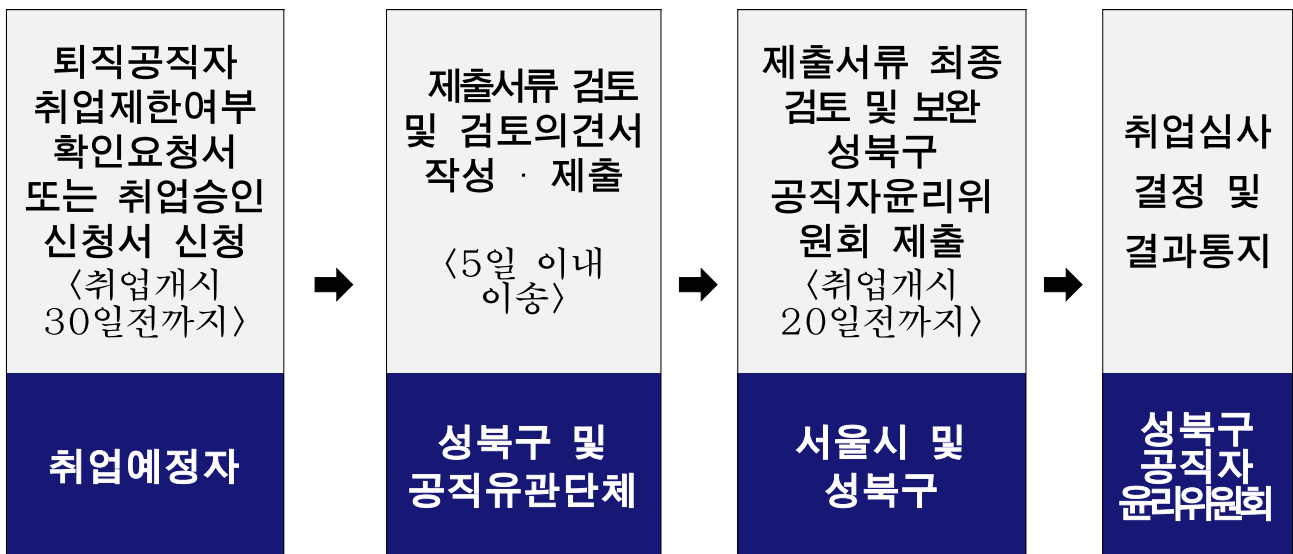
### 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범위

-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-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관계되는 업무
-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 검사 감사에 관계되는 업무
-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는 업무
-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에 관계되는 업무
-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업무
-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에 관계되는 업무
-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관계되는 업무

## ■ 취업 승인

- **내 용** : 업무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나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승인
- **신청대상** :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
- **신청기관** :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
- **제출서류** : 취업승인신청서, 취업예정확인서

## ■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



### << 취업제한여부 확인과 승인 비교 >>

	취업제한 여부 확인	취업승인
<b>개 념</b>	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<u>밀접한 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는 것</u>	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<u>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</u>

## ■ 임의취업 여부 조사

- 대상자 : 취업제한대상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조사방법 : 국가기관 등이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여부 조회
- 조사결과 보고 : 공직자윤리위원회(반기별)
  - ※ 사외이사·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

## ■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
-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
  -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 : 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 4

## 행정사항

- 2016년 상·하반기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 실시
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자격 취득여부 조회(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일괄조회)
  - PETI시스템을 통하여 퇴직자 관리
- 퇴직공직자 발생시 개별 안내문 발송

## IV

#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운영

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,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·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,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고자 함

### 1

### 개 요

#### ■ 백지신탁(Blind Trust)이란?

- 고위공무원(신탁자)이 재산의 관리·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(Trust)
- 금융회사(수탁자)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
- 신탁자가 변경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(Blind)함으로써,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

#### ■ 대 상 자 : 재산공개대상자(24명)

- 구청장, 성북구의회 의원 22명,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

#### ■ 대상주식

- 본인 및 이해관계자(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)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
- 다만,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·통지된 주식은 대상주식에서 제외

#### ■ 기 준 일

-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·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



- 공개대상자가 된 날
-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
-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음을 통지받은 날
- 백지신탁 후 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
- 공개대상자의 직무가 변경된 날
  - ※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
-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

## 2

### 관련근거

####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~제14조의14

## 3

### 세부추진계획

#### 주식의 매각 ·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

-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,
  - 주식매각·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여, 등록기관에 신고
-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'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함.'

####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

-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(소속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청구)
  - ※ 다만,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·고시한 주식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

- 심사청구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
  - 심사 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,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함
-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·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생략

## ■ 직무관련성 통지 후 조치사항

- ‘직무관련성 있음’으로 결정·통지된 경우
  -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
    - ※ 심사청구한 주식 중 일부가 ‘직무관련성 있음’ 결정되었으나 그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. 다만, 향후 그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
- ‘직무관련성 없음’으로 결정·통지된 경우
  -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

## 4

## 행정사항

### ■ 행정지원과, 구의회사무국, 성북구도시관리공단

- 주식매각 및 심사청구 등의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식초과보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안내 협조

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·간접을 불문하고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,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관례상 공직자가 외국(외국인)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 함

## 1

## 개 요

## ■ 신고의무자

- 공무원(지방의회의원 포함)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 포함)

## ■ 대상 선물

-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

## 2

## 관련근거

## ■ 공직자윤리법 제15조, 제16조

## 3

## 세부추진계획

## ■ 신고절차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
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(인)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감사담당부서에 선물목록을 제출

## ■ 선물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 (공직자윤리법 제22조)

**■ 행정지원과**

- 공무 국외여행 명령시 공직자 선물신고 관련 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토록 협조

붙임 : 1. 2016년 재산 정기변동 신고대상자 명단 1부.  
2. 2016년 최초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명단 1부.  
3. 201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1부.  
4. 2016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안내 1부.